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1. 제안이유

가.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저탄소·친환경 녹색 수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국제 도시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이미지 제고와 아울러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함.

나. 최근 전기자동차가 출시되는 등 전기차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많지 않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으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 저탄소·친환경 녹색 수도로서 이미지 제고(경쟁력 구비)

- ▶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대비 시민의 수요 반영 및 충전인프라 구축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소유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안 제24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3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소유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